

# 2026학년도 제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필수교육 시행 안내

## 1. 관련

- 가.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19조 제3항 관련 [별표 1]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3호 내지 제5호
- 나.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0조(응급처치교육 등)

## 2. 신청 대상자

교육대학원 ‘교원양성과정자’ 또는 ‘재교육과정자 부전공 취득과정자’로서 각 필수교육 이수 횟수가 2회 미만인 자

## 3. 필수교육별 이수 내용 및 이수 기준

순번	필수교육 구분	무시험검정 합격 기준	이수 내용	이수 기준
1	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	2회	문항 수: 120문항(문항당 4점, 총 480점 만점)	480점 만점 중 288점 이상
2	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	2회	1. 이론교육 1시간 가. 응급상황 대처요령 나.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유의사항 다. 응급의료 관련 법령 2. 실습교육 2시간 -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	100% 이수
3	성인지 교육	2회	1.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2. 가정·학교(대학 포함)·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. 아동학대 예방교육 4.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5.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	100% 이수

## 4. 2026학년도 제1학기 필수교육별 시행 내용 \* 오프라인 필수교육 참석자는 신분증 필수 지참

순번	필수교육 구분	필수교육 신청 기간 및 대체 인정 신청 기간	필수교육 시행 내용			대체 인정 여부 '7. 대체 인정' 참조
			방법	일정	장소	
1	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	6. 8.(월)~11.(목)	오프라인	6. 20.(토) 11시~15시	A301	불가
2	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	6. 8.(월)~11.(목)	오프라인	6. 20.(토) 10시~13시	A304	가능
3	성인지 교육*	6. 8.(월)~11.(목)	온라인**	6. 15.(월)~18.(목)	e-Campus	가능

\* 성인지 교육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수를 권장하며, 연 2회 이상 이수(신청) 시 사유서 업로드 필요함

\*\* 성인지 교육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반드시 오프라인 방식으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함

## 5. 이수 횟수 확인 방법

[샘물 통합정보시스템 - 학생기본 - 학적정보 - 개인정보수정 - 기본정보(탭) - 학적사항] 하단에서 이수 횟수 확인  
<예시> 아래의 경우,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1회를 이수해야 함

구분 (횟수)	통과일자(1)	통과일자(2)	통과일자(3)	통과일자(4)
응급처치 (2)	20221020	20231218		
적인성검사 (1)	20230624			
성인지교육 (2)	20211213	20221212		

6. 필수교육 신청 방법 \* 미신청자는 필수교육 이수 불가

순번	필수교육 구분	필수교육 신청 기간	신청 메뉴 [샘물 통합정보시스템-학생정보-교직정보]	신청 방법
1	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	6. 8.(월)~11.(목)	적성 및 인성검사평가 신청	- 차수: 1차 - 선택 후 '신청' 버튼 클릭 ▶ 신청 완료
2	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	6. 8.(월)~11.(목)	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	- 차수: 1차 - 프로그램명: 상명대학교(교육대학원) - 선택 후 '신청' 버튼 클릭 ▶ 신청 완료
3	성인지 교육	6. 8.(월)~11.(목)	성인지교육 신청	- 차수: 1회 - 프로그램명: 상명대학교(교육대학원) - 선택 후 '신청' 버튼 클릭 ▶ 신청 완료

7. 대체 인정 방법 \* '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'는 대체 인정 불가

가. 대체 인정 신청 방법

순번	필수교육 구분	대체 인정 신청 기간	신청 메뉴 [샘물 통합정보시스템-학생정보-교직정보]	신청(업로드) 방법
1	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	6. 8.(월)~11.(목)	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	- 차수: 1차 - 프로그램명: 소속학교(기관) - 선택 후 '신청' 버튼 클릭 - 하단 신청 목록의 '첨부파일' 버튼 클릭 후 파일 업로드 - 파일 업로드 후 '첨부파일 저장' 버튼 클릭 ▶ 신청(업로드) 완료 *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
2	성인지 교육	6. 8.(월)~11.(목)	성인지교육 신청	- 차수: 1회 - 프로그램명: 소속학교(기관) - 선택 후 '신청' 버튼 클릭 - 상단 신청 목록의 '첨부파일' 버튼 클릭 후 파일 업로드 - 파일 업로드 후 '첨부파일 저장' 버튼 클릭 ▶ 신청(업로드) 완료

나. 대체 인정 기준

- 1)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, 산학겸임교사, 강사, 직원 등이 소속학교(또는 교육청, 교육청 소속기관)에서 실시하는 '응급처치 교육' 또는 '성인지 교육'을 이수할 경우 대체 인정할 수 있음
- 2)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
- 3) 이수증 또는 소속학교(기관)의 내부결재 문서(시행계획, 시행결과, 참석명부 포함)으로 증빙하며,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업로드함
- 4) 증빙자료로 '3. 필수교육별 이수 내용 및 이수 기준'에 따른 이수 내용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

8. 문의처: 대학원교학팀(서울캠퍼스 대학본부 J417호 / 02-2287-6432)